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91
----------	-----

제출년월일 : '98. 9. .
제안자 : 안 산 시 장

□ 개정이유

-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기구.정원의 감축으로 자치화·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로 정비하여 「작고 생산적인 지방정부」를 지향하고
- 기능을 대폭 줄여 나가면서 고비용·저효율 개선을 통한 행정조직의 생산성 제고로 21세기를 대응하여 효율적인 기구.정원관리와 업무수행을 위함.

□ 주요골자

○ 국 명칭변경 및 재편제

- 명칭변경 : 총무국→행정지원국, 사회경제국→경제통상국, 환경국→복지환경국, 도시국→도시계획국
- 국 재편 : 기획실,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행정지원국

○ 본청 3개 과 감축 및 1개 과 신설

- 감 축 : 시정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여성복지과
- 신 설 : 통상협력과

○ 과 명칭변경 : 13개과

- 기획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문화체육담당관, 전산통계담당관→정보화담당관, 시민과→민원봉사과, 회계과→재무과, 지역경제과→유통경제과, 공업과→기업지원과, 산업과→농어촌진흥과, 사회복지과→사회·여성과, 도시과→도시계획과, 녹지과→공원녹지과, 상수도사업소(공무과→수도시설과, 시설관리과→정수과)

○ 실·과 직제개편

- 기 획 실 :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담당관실, 정보회담당관실
- 경제통상국 : 유통경제과, 기업지원과, 통상협력과, 농어촌진흥과
- 복지환경국 : 사회·여성과, 공원녹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 도시계획국 :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지적과
- 건설교통국 : 건설과, 하수과, 시설공사와, 교통행정과
- 행정지원국 :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재무과

○ 유사중복분야 통폐합 및 기능쇠퇴사업소 폐지

- 여성회관+근로청소년복지회관 통폐합→여성복지회관 신설
- 노동복지회관 업무 분청으로 흡수 폐지

○ 인구 5천미만 과소동 통폐합

- 공단동+초지동 → 초지동

○ 분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동설치조례 통폐합

○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명칭등의 변경으로 인한 타조례의 개정

-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외 35개 조례

□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02조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 경기도 자치 12200-1252('98. 6.24)호 공문
- 경기도 자치 12200-1409('98. 7.15)호 공문

○ 연간 추가소요예산 : 해당없음.

○ 조 례 안 : 별 첨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인 안산시 보건소를 둔다.

② 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출장소인 안산시 대부출장소를 둔다.

③ 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업소인 안산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안산시 상수도사업소, 안산시 환경사업소,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안산시 관산도서관, 안산시 여성복지회관,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산시 청소사업소,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를 둔다.

④ 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하부행정기관인 일동, 사1동, 사2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부곡동, 월피동, 와동, 고잔1동, 고잔2동, 성포동,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초지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반월동, 대부동, 안산동을 둔다.

제3조(소재지) 시본청, 소속기관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2장 본 청

제4조(실.국의 설치) 본청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행정지원국을 둔다.

제5조(기획실) ① 기획실에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정보화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실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 운영
3. 투.융자사업 및 주요투자사업 심사.분석
4. 조례.규칙의 심사 및 소송업무
5. 시행정의 감사 및 복무감찰
6.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7. 행정전산화 추진 및 전산개발·유지관리
8. 정보통신망 구축 및 통계정보 자료조사 관리

제6조(경제통상국) ① 경제통상국에 유통경제과, 기업지원과, 통상협력과, 농어촌진흥과를 둔다.

② 경제통상국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2.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3. 에너지 수급 및 안전대책
4.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 지원관리
5. 중소기업 지원 육성
6. 첨단산업에 관한 업무
7.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8. 외자유치 및 수출진흥
9.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10. 농·수·축산 진흥에 관한 사항
11.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업무

제7조(복지환경국) ① 복지환경국에 사회·여성과, 공원녹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를 둔다.

② 복지환경국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시설 업무
2. 생활보호(취로), 의료보호, 행여환자 관련 업무
3. 장애인, 보훈단체 관련 업무
4. 노인, 청소년, 여성, 아동복지 관련 업무
5. 공원·녹지조성 및 관리 업무
6.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관리 업무
7. 조경시설 및 양묘사업 업무
8. 환경 및 오염관련 업무
9. 공중, 식품위생업소 관련 업무
10. 매장, 묘지관련 업무

제8조(도시계획국) ① 도시계획국에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지적과를 둔다.

② 도시계획국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토이용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관련 업무
2.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3.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역개발사업,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업무
4. 개발제한구역, 옥외광고물 관리
5. 주택·건축허가 및 관리
6. 도시설계, 건축물 건축허가 및 관리
7. 토지이동 및 지적도 정리, 공시지가 산정
8.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발급

제9조(건설교통국) ① 건설교통국에 건설과, 하수과, 시설공사과, 교통행정과를 둔다.

② 건설교통국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및 시행
2. 도로사업에 따른 토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3. 전문건설업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 도로시설물,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6.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
7. 하천관리 및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
8. 지하수 개발 및 이용관리
9.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 공사(토목, 건축)설계 및 시공감독
10. 교통기획일반 및 교통영향평가, 교통량 조사
11. 자동차운수, 관리사업 인.허가 및 지도감독
12.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13. 교통질서 계도 및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제10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재무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서, 공인, 복무, 의전, 공무원 인사, 공무원 교육훈련
2. 동 행정의 지도.감독, 행정구역관리, 선거 및 국민투표
3. 국민운동지원 및 진흥업무
4. 민방위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5. 민원, 호적, 병무에 관한 사항
6. 지방세정에 관한 사항
7. 지출, 계약, 국.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제11조(설치) ① 지역보건법 제2조, 제4조, 제7조,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명 칭	관 할 구 역
안산시 보건소	안산시 일원
안산시 보건소 대부보건지소	대부동 일원
안산시 보건소 성포보건지소	안산시 일원

제12조(소장)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과 지소장을 둔다.

② 지소장은 의사면허소지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소장을 임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규정에 의한 보건의사로 하여금 지소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업무)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2절 보건진료소

제14조(설치) ①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이 절에서 “농특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명 칭	관 할 구 역
안산시 보건소 대부남동보건진료소	대부남동 일원

제15조(업무) 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내에서 농특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보건진료원) ①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 보건진료원은 농특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호사, 조산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7조(사무직원)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 이외에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18조(보건진료소 운영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농특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출 장 소

제19조(설치) ① 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산시 대부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명 칭	관 할 구 역
안산시 대부출장소	대부동 일원

제20조(소장) ①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대부출장소장이 대부동장을 겸한다.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업무) 출장소장은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5장 사 업 소

제1절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제22조(목적) 안산신도시 제2단계 건설사업지원 및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소장) ① 사업소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도시 제2단계 건설사업관련 보상 및 이주대책 업무
2. 주택건설사업
3. 택지개발사업
4. 기타 신도시건설사업 및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업무

제2절 상수도사업소

제25조(목적)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고 상수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산시 상수도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소장) ① 사업소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수도시설 확충 및 종합계획 수립 시행
2. 상수원관리 및 상수도 시설의 운영 유지 관리
3. 취·정수, 생활·공업용수의 생산 및 송·배급수 업무
4. 누수방지 및 노후관 교체
5. 수도요금, 시설분담금, 정액요금, 제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6. 시민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간이상수도 및 먹는물 관련 업무
- 8 그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과금 과징업무

제3절 환경사업소

제28조(목적) 방류되는 오수 및 하수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안산시 환경사업소 (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29조(소장) ① 사업소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2. 처리장 시설의 증설, 보수 및 유지관리
3. 방류수의 수질관리
4. 하수처리 방법의 연구개발
5. 기타 하수의 종말처리에 관한 사항

제4절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제31조(목적)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그날의 영광을 전승기념하기 위하여 건립한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 생활관(이하 "국민생활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32조(관장) ① 국민생활관에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업무) 국민생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민의 문화생활, 체육진흥사업
2. 시민의 정서함양, 교양강좌 등 건전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
3.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체육, 문화활동 지원
4. 경기시설 및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및 입장권 판매
5. 올림픽 영광 전승사업
6. 기타 국민생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5절 관산도서관

제34조(목적) 시민의 학술연구와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한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안산시 관산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35조(명칭) 도서관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명 칭
본	관	안산시 관산도서관
분	관	안산시 관산도서관 성포분관
분	관	안산시 관산도서관 감골분관

제36조(관장) ① 도서관에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7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자료의 선정구입, 수집정리 및 보관
2. 도서관 자료의 보관 및 열람
3. 도서관 및 독서시설의 유지관리
4. 독서관장사업 및 강연회, 전시회, 각종 문학강좌 등 문화활동 추진
5. 기타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절 여성복지회관

제38조(목적) 여성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층 및 일반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근로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안산시 여성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39조(관장) ① 복지회관에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0조(업무) 복지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제적 자립기반을 위한 기술교육
2. 건전한 정서문화 함양을 위한 취미교육
3. 여성의 사회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4. 신상 및 생활고충상담
5. 근로청소년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교육
6. 근로청소년 복지시설 및 취미교육 운영
7. 기타 여성 및 근로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7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제41조(목적)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시설물관리, 거래질서유지, 유통종사자 지도·감독을 위하여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제42조(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3조(업무) 사무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
2.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3.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지도·감독

제8절 청소사업소

제44조(목적) 안산시 폐기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안산시 청소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45조(소장) ① 사업소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6조(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폐기물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
2.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허가·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14 (부록)

3. 환경미화원 및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5.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6.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관한 사항

제9절 차량등록사업소

제47조(목적) 차량등록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48조(소장) ① 사업소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9조(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동차 등록에 관한 업무
2.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저당권에 관한 업무
3.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관한 업무
4. 건설기계에 관한 업무
5. 자가용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제6장 동

제50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업무를 관장한다.

제51조(동장) ① 동에는 동장을 둔다.

② 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2조(관할구역)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의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53조(직급기준등) 본청의 실·국장 및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출장소장, 사업소의 장 및 과장의 직급과 세부적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조례 제759호), 안산시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조례 제569호), 안산시출장소설치조례(조례 제568호), 안산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조례 제482호), 안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조례 제722호),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조례 제625호),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조례 제716호), 안산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조례 제512호),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조례(조례 제419호), 안산시관산도서관설치조례(조례 제753호),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조례 제635호),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조례 제604호), 안산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조례 제723호),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조례 제463호), 안산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조례 제669호),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조례 제687호)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제6조의 제명“(간사장)”을 “(간사)”로 하며, 동조 제1항중 “간사장1인 및 간사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를 “간사 1인을 둔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간사는 기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간사는 투자경영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안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를 “간사1인을 둔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투자경영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④ 안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기획담당관”과 “투자심사계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과 “투자경영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 안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투자심사계장”을 “투자경영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⑥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중 “문화공보담당관”과 “문화계장”을 각각 “문화체육담당관”과 “예술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⑦ 안산시최용신봉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문화공보담당관”과 “문화계장”을 각각 “문화체육담당관”과 “문화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⑧ 안산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문화공보담당관”과 “문화공보담당관실”을 각각 “문화체육담당관”과 “문화체육담당관실”로 한다.

⑨ 안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체육담당관”으로 한다.

⑩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중 “문화공보담당관”과 “체육지원계장”을 각각 “문화체육담당관”과 “체육진흥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⑪ 안산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제11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 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⑫ 안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를 폐지하고, 동항제3호중 “문화공보담당관”을 “공보팀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⑬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 중 구분란 “문화공보행정”, “보사행정” 및 “산업행정”을 각각 “문화공보체육 행정”, “복지행정”, “농어촌진흥행정”으로 한다.

⑭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별표1] 비고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⑮ 안산시지방세입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의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중 “계장확인”을 “담당주사 확인”으로 하고, 제6조제2항의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 부표]중 “세무 과장”을 각각 “세무1.2과장”으로 한다.

⑯ 안산시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별지 제10호 서식] 중 결재란의 “계장”을 삭제하고, 제28조제1항 [별지 제6호 서식] 중 결재란의 “계”를 삭제하며, “계장”을 “담당주사”로 한다.

⑰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⑱ 안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과장”과 “의료보장계장”을 각각 “사회·여성과장”과 “복지사업팀장”으로 한다.

⑭ 안산시여성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사회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중 “여성복지과장”과 “여성복지계장”을 각각 “사회·여성과장”과 “여성복지팀장”으로 한다.

⑮ 안산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여성복지과장”을 “사회·여성과장”으로 한다.

⑯ 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사회복지과장”과 “노인청소년계장”을 각각 “사회·여성과장”과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제11조 제1항중 “사회경제국장”, “사회복지과장” 및 “노인청소년계장”을 각각 “복지환경국장”, “사회·여성과장”,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⑰ 안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사회진흥과장”을 “사회·여성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중 “노인청소년계장”을 “청소년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⑱ 안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중 “사회경제국장”을 각각 “경제통상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중 “지역경제과장”을 “유통경제과장”으로 한다.

㉑ 안산시도시가스수요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담당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㉒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공업과장”과 “공업진흥계장”을 각각 “기업지원과장”과 “자금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제20조제1항중 “사회경제국장”과 “공업진흥계장”을 각각 “경제통상국장”과 “자금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㉓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사회경제국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3호중 “산업위원회”를 “보사.환경위원회”로 하고, 동조제6항중 “공업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㉔ 안산시자가발전시설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동장”을 “출장소장”으로 한다.

㉕ 안산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별지 제8호 서식)중 결재란의 “계장”을 “담당주사”로 하고, “계”를 삭제한다.

㉖ 안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환경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㉗ 안산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토지관리계장”을 “토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㉘ 안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실무계장”을 “실무업무담당주사”로 한다.

㉔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㉕ 안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간사는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보건소 담당주사 또는 팀장으로 한다.

㉖ 안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보건소 계장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를 “보건소 담당주사 또는 팀장으로 한다”로 한다.

㉗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관리계장”을 “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㉘ 안산시도서관지원및독서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사설열람계장”을 “사서열람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한시기구에 관한 규정) 제5장 제1절 및 동장 제7절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존속기한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안산시청 및 소속기관의 소재지

구 분	기 관 명	소 재 지
본 청	안 산 시 청	안산시고잔동 515번지
직속기관	안 산 시 보 건 소	안산시 고잔동 515번지
	안 산 시 보 건 소 대 부 보 건 지 소	안산시 대부북동 467번지
	안 산 시 보 건 소 성 포 보 건 지 소	안산시 고잔동 515번지
	안 산 시 보 건 소 대부남동보건진료소	안산시 대부남동 1071-8번지
출 장 소	안 산 시 대부출장소	안산시 대부북동 467번지
사 업 소	안산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	안산시 고잔동 531-1번지
	안산시 상수도사업소	안산시 고잔동 529-2번지
	안산시 환경사업소	안산시 성곡동 621번지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안산시 고잔동 604번지
	안산시 관산도서관	안산시 원곡동 산 31번지
	안산시 관산도서관 성포분관	안산시 성포동 산 47-1번지
	안산시 관산도서관 감골분관	안산시 사동 산 83-8번지
	안산시 여성복지회관(본관)	안산시 고잔동 525번지
	안산시 여성복지회관(분관)	안산시 원곡동 643-7번지
	안 산 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산시 이동 528번지
	안산시 청소사업소	안산시 고잔동 515번지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안산시 고잔동 515번지

구 분	기 관 명	소 재 지
동	일 동	안산시 일동 110-5번지
	사 1 동	안산시 사동 1304번지
	사 2 동	안산시 사동 1344-5번지
	본 오 1 동	안산시 본오동 920번지
	본 오 2 동	안산시 본오동 796-4번지
	본 오 3 동	안산시 본오동 873번지
	부 곡 동	안산시 부곡동 671-4번지
	월 피 동	안산시 부곡동 738번지
	와 동	안산시 와동 111-4번지
	고 잔 1 동	안산시 고잔동 659-6번지
	고 잔 2 동	안산시 고잔동 672-3번지
	성 포 동	안산시 성포동 585번지
	원 곡 본 동	안산시 원곡동 746-6번지
	원 곡 1 동	안산시 원곡동 821-1번지
	원 곡 2 동	안산시 원곡동 936-5번지
	초 지 동	안산시 초지동 606-1번지
	선 부 1 동	안산시 선부동 964-4번지
	선 부 2 동	안산시 선부동 997-2번지
	선 부 3 동	안산시 선부동 1135번지
	반 월 동	안산시 건전동 643-4번지
	대 부 동	안산시 대부북동 467번지
	안 산 동	안산시 수암동 441-9번지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691
----------	-----

제출년월일 : '98. 9. 19

제 출 자 : 의회·총무 위원회
노영호위원장의 6인

1. 수정이유

-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계획에 따라 안산시 지방행정조직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나 조례 조문 중 일부 누락사항 및 미비사항을 수정하여 안산시 행정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2. 수정주요골자

- 제5조(기획실) 제2항중 제9호 “공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제6조(경제통상국) 제2항중 제12호 “실업에 관한 업무”를 신설함.
- 제7조(복지환경국) 제2항 제2호중 “행여환자”를 “행려자”로 수정함.
- 제10조(행정지원국) 제2항 제3호 “국민운동지원 및 진흥업무”를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함.
- 제12조(소장) 제2항중 “보건 의사”를 “공중보건 의사”로 수정함.
- “제39조(관장) 내지 제53조”를 “제40조(관장) 내지 제54조”로 하고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제39조(명칭) 복지회관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구 분	명 칭
본 관 분 관	안산시여성복지회관 안산시여성복지회관분관

부 칙

- 부칙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중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조례 제716호)”를 삭제함.
-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
④안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중 “기획담당관”과 “투자심사계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과 “투자경영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6항중 “동조 제4항 제3호중 “산업위원회”를 “보사·환경위원회”로 하고”를 삭제한다.
- 부칙(다른조례의 개정) “ 제37항 내지 제3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③⑦안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중 “호적업무담당과”를 “민원봉사과”로 하고 “호적계장을
“호적업무담당주사”로 한다.

㉞안산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중 “하수행정계장”을 “하수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㉟안산시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제2항중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보에관한 사항

제6조 제2항중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실업에 관한 업무

제7조 제2항 제2호중 “행여환자”를 “행려자”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제3호 “국민운영지원 및 진흥업무”를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중 “보건 의사”를 “공중보건 의사”로 한다.

제39조(관장)내지 제53조를 제40조(관장) 내지 제54조로 하고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명칭)복지회관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명 칭
본 관	안산시여성복지회관
분 관	안산시여성복지회관분관

부칙 제2조 중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조례 제716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안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중 “기획담당관”과 “투자심사계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과 “투자경영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제3조제26항중 “ 등조제4항제3호중 “산업위원회”를 “보사·환경위원회”로 하고” 를 삭제한다.

부칙 제3조중 제37항 내지 제3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⑳안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호적업무담당과”를 “민원봉사과”로 하고 “호적계장을 ”호적업무담당주사“로 한다.

㉑안산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하수행정계장”을 “하수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㉒안산시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제4조(실국의설치) (생략)</p> <p>제5조(기획실) ①(생략) ②기획실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8(생략) <신 설></p> <p>제6조(경제통상국) ①(생략) ②경제통상국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11(생략) <신 설></p> <p>제7조(복지환경국) ①(생략) ②복지환경국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생활보호(취로), 의료보호, <u>행여환</u> <u>자</u> 관련 업무 3. ~10(생략)</p> <p>제12조(소장) ①(생략) ②지소장은 의사면허 소지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규정에 의한 <u>보건의사로</u> 하여금 지소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1조(목적) ~제4조(실국의설치) (원안과 같음)</p> <p>제6조(기획실) ①(원안과 같음) ②..... ... 1~8(원안과 같음) 9. <u>공보에 관한 사항</u></p> <p>제8조(경제통상국) ①(원안과 같음) ②..... 1~11(원안과 같음) 12. <u>실업에 관한 업무</u></p> <p>제7조(복지환경국) ①(원안과 같음) ②..... 1. (원안과 같음) 2..... <u>행려</u> <u>자</u>..... 3. ~10(원안과 같음)</p> <p>제12조(소장) ①(원안과 같음) ②..... <u>공중보건의사로</u>..... </p>

원 안	수 정 안						
<p><신 설></p>	<p>제39조(명칭) 복지회관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39조(관장) 내지 제53조(직급기준등)</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생략)</p> <p>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조례 제759호), 안산시보건소설치 및운영조례(조례 제569호), 안산시출장소설치조례(조례 제568호), 안산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조례 제482호), 안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조례 제722호),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조례 제625호),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조례 제716호), 안산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p>	<table border="1" data-bbox="700 490 1204 705"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명 칭</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본 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안산시여성복지회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분 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안산시여성복지회관분관</td> </tr> </tbody> </table> <p>제40조(직무) 내지 제54조(직급기준등)</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원안과 같음)</p> <p>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삭 제>.....</p>	구 분	명 칭	본 관	안산시여성복지회관	분 관	안산시여성복지회관분관
구 분	명 칭						
본 관	안산시여성복지회관						
분 관	안산시여성복지회관분관						

원안	수정안
<p>(조례 제512호),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조례(조례 제419호), 안산시관산도서관설치조례(조례 제753호),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조례 제635호),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조례 제604호), 안산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조례 제723호),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조례 제463호), 안산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조례 제669호),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조례 제687호)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p>	<p>.....</p>
<p>제3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p> <p>④안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③ (원안과 같음)</p> <p>④.....</p> <p>.....</p> <p>.....</p>
<p>〈산 설〉</p>	<p>제2조중 “내무부장관”을 “<u>행정자치부장관</u>”으로 한다.</p>
<p>제9조 제1항중 “기획담당관”과 “투자심사계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과 “투자경영업무담당주사”로 한다.</p> <p>⑤~⑥ (생략)</p>	<p>.....</p> <p>.....</p> <p>.....</p> <p>.....</p> <p>⑤~⑥ (원안과 같음)</p>

원안	수정안
<p>㉔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 제3항중 “사회경제국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4항 제3호중 “산업위원회”를 “보사·환경위원회”로 하고, 동조 제6항중 “공업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p> <p>㉕~㉖ (생략)</p> <p>〈신설〉</p>	<p>㉔.....〈삭제〉.....</p> <p>㉕~㉖ (원안과 같음)</p> <p>㉗안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 제4호중 “호적업무담당과”를 “민원봉사과”로 하고 “호적계장”을 “호적업무담당주사”로 한다.</p> <p>㉘안산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 제1항 제2호중 “하수행정계장”을 “하수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p> <p>㉙안산시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 및 제4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p> <p>제4조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p>